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B1블록 및 다산지금A2블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 10. 29.)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B1블록 및 다산지금A2블록은 주택도시보증금과 GH가 출자한 리츠[(주)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경기리츠1회]가 사업시행하는 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GH는 경기리츠1호로부터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경기리츠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공 급 개 요】

- 광고번호 : 2021000809, 2021000810
-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개요

구 분	다산진건B1블록	다산지금A2블록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급호수	651세대	961세대
주택형	72, 84	51, 59
아파트명	다산진건 데시앙	다산지금 데시앙

-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다산진건B1블록	다산지금A2블록
주택관리번호	2021000809	2021000810

- 공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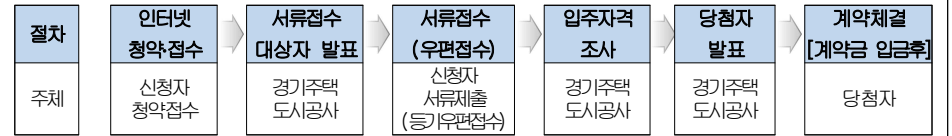
청약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검증 부적격자 소명처리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1. 11. 15. ~ '21. 11. 22.	'21. 12. 07.	'21. 12. 13. ~ '21. 12. 20.	소명대상자 별도통보	'22. 03. 14.	'22. 03. 21. ~ '22. 03. 31.

- ※ 경기리츠1호(다산진건B1블록 및 다산지금A2블록)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20년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 우선권 없음)
-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반한 행위로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터넷 청약신청, 우편접수를 통한 서류접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 **금번 모집공고에서는 단지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으로 판단될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산진건B1블록 및 다산지금A2블록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공급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선정절차



- ※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및 대상, 신청자격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정하는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1.10.29.**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어건, 주변 환경은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진건B1블록, 다산지금A2블록은 모두 전용면적 **40㎡ 초과로 공급되어 단독세대주(1인가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순위별(1, 2, 3순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신청자가 1순위 접수일인 11월 18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1월 19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마감 시 홈페이지 게시) 서류접수 대상자는 공급 세대의 2배수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접 수 안 내

- 금회 모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https://apply.gh.or.kr)**을 통해 온라인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 **예약기간 : 2021.11.1.(월) ~ 2021.11.10.(수)**
 - **예약방법 : 홍보관 콜센터 전화신청(031-554-1633)**
 - 접수완료 후 콜센터에서 <예약접수 인증문자> 전송하며, 현장접수 당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인증문자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입장이 불가 합니다.
 - 현장청약을 위해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접수를 위하여 현장청약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참고)
 - 현장청약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및 체온 37.5도 이상인 분에 대하여는 현장청약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방문 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청약 시에는 개인별 발열체크, 소독, 청약접수 동시입장인원 제한 등으로 장기간 대기가 예상됩니다.
 - 현장청약 기간에는 극심한 혼잡으로 **상당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가. 전용면적 60㎡ 초과 [다산진건B1블록]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기간 (우편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현장						
우선공급		'21.11.15(월) 10:00 ~ 11.17(수) 18:00		'21.12.7(화) (18:00 이후)	'21.12.13(월) ~ '21.12.20(월)	'22.3.14(월) (18:00 이후)	(온라인계약) '22.3.21.(월) 10:00 ~'22.3.31(목) 17:00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이하 [2인 110%]	1순위	'21.11.18(목) 10:00 ~ 18:00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접수가능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제출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 번길12-14 (메트로타워4층, 경기리츠 홍보관)	(현장계약) ※현장계약 장소는 계약대상자 별도 공지
		2순위	'21.11.19(금) 10:00 ~ 18:00						
		3순위	'21.11.19(금) 10:00 ~ 18:00						
	월평균소득 100%초과~ 120%이하 [2인 130%]	1순위	'21.11.22(월) 10:00 ~ 18:00						
		2순위							
		3순위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다산지금A2블록]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기간 (우편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현장						
우선공급		'21.11.15(월) 10:00 ~ 11.17(수) 18:00		'21.12.7(화) (18:00 이후)	'21.12.13(월) ~ '21.12.20(월)	'22.3.14(월) (18:00 이후)	(온라인계약) '22.3.21.(월) 10:00 ~'22.3.31(목) 17:00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70%이하 [2인 80%]	1순위	'21.11.18(목) 10:00 ~ 18:00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접수가능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제출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 번길12-14 (메트로타워4층, 경기리츠 홍보관)	(현장계약) ※현장계약 장소는 계약대상자 별도 공지
		2순위	'21.11.19(금) 10:00 ~ 18:00						
		3순위	'21.11.19(금) 10:00 ~ 18:00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 [2인 110%]	1순위	'21.11.22(월) 10:00 ~ 18:00						
		2순위							
		3순위							

■ 현장접수 일정 (10:00~16:00)

구분	대상자	접수일	비고	현장접수처
우선공급		11.15(월) ~11.17(수)	우선공급 조건 충족자	(경기리츠1호 홍보관)
일반공급	사전예약자에 한함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11.18(목)	-진건B1(72형, 84형) 월평균소득 100%이하 1순위 -지금A2(51형, 59형) 월평균소득 70%이하 1순위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12-14 (메트로타워4층, 경기리츠 홍보관)
		11.19(금)	-진건B1(72형, 84형) 월평균소득 100%이하 2-3순위 -지금A2(51형, 59형) 월평균소득 70%이하 2-3순위	
		11.22(월)	-진건B1(72형, 84형) 월평균소득 100%초과 ~120%이하 -지금A2(51형, 59형) 월평균소득 70%초과 ~100%이하	

■ 공급일정 유의사항

• 진건B1블록, 지금A2블록 일반공급 신청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apply.gh.or.kr)에 게시합니다.
-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예 : 11.18(목) 일반공급 1순위 신청 시, 11.18(목)온라인 마감시간(18:00) 전까지만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 변경불가)
- * 월평균소득 진건B1블록 100% 이하가 100% 초과~120% 이하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100%초과~120%이하로 간주하며, 100%이하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월평균소득 지금A2블록 70% 이하가 70% 초과~100% 이하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70% 초과~100% 이하로 간주하며, 70%이하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추후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청약통장은 순위 확인용으로, 해당 장기전세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 위 치

- (다산진건B1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 블록
- (다산지금A2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2 블록

■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책형	주책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다산진건 B1블록	72	72A	72.98	23.90	40.27	137.16	112	80	32	257,580	25,758	231,822	22년 9월	
			84B	84.98	25.90	46.89	157.78	320	233	87	275,600	27,560		248,040
			84C	84.95	27.27	46.87	159.11	110	80	30	275,600	27,560		248,040
			84C1	84.98	26.23	46.89	158.10	27	20	7	275,600	27,560		248,040
			84C2	84.98	26.23	46.89	158.10	29	22	7	275,600	27,560		248,040
다산지금 A2블록	51	51A	51.49	18.29	33.40	103.19	142	91	51	194,510	19,451	175,059		
			51B	51.42	18.67	33.35	103.44	26	17	9	194,510	19,451		175,059
			59A	59.12	21.30	38.35	118.78	493	339	154	216,770	21,677		195,093
			59B	59.74	21.71	38.74	120.20	162	109	53	219,420	21,942		197,478
			59C	59.60	21.84	38.66	120.11	138	89	49	218,890	21,889		197,001

• 위 임대대상의 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된 면적으로 계약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타입별(ex-A,B,C1,C2,D타입)로 접수 받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확장된 발코니 포함)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이나, 세대 전유공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당첨 취소,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을 대비하여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84C2 29세대는 3세대 동거형 주택으로 84C1에 중문 및 주방을 추가했으며, 일반적인 공동주택 평면과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임주자모집공고일('21.10.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임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청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금번 공급 주택에 신청 불가**)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용면적 60㎡ 초과[다산진건B1블록] 월평균소득 120%(단, 2인 가구 경우 130%) 이하까지 신청가능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다산지금A2블록] 월평균소득 100%(단, 2인 가구 경우 110%) 이하까지 신청가능 월평균 소득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 70%</th> <th>월평균소득 100%</th> <th>월평균 소득 120%</th> </tr> </thead> <tbody> <tr> <td>2인 가구</td> <td>3,650,028원 이하(80%)</td> <td>5,018,789원 이하(110%)</td> <td>5,931,296원 이하(130%)</td> </tr> <tr> <td>3인 가구</td> <td>4,368,364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d>7,488,624원 이하</td> </tr> <tr> <td>4인·5인 가구</td> <td>4,965,944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d>8,513,046원 이하</td> </tr> <tr> <td>6인 가구</td> <td>5,175,553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d>8,872,376원 이하</td> </tr> <tr> <td>7인 가구</td> <td>5,444,616원 이하</td> <td>7,778,023원 이하</td> <td>9,333,628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2인 가구	3,650,028원 이하(80%)	5,018,789원 이하(110%)	5,931,296원 이하(130%)	3인 가구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5인 가구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인 가구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이하	8,872,376원 이하	7인 가구	5,444,616원 이하	7,778,023원 이하	9,333,628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2인 가구	3,650,028원 이하(80%)	5,018,789원 이하(110%)	5,931,296원 이하(130%)																								
	3인 가구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5인 가구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인 가구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이하	8,872,376원 이하																								
	7인 가구	5,444,616원 이하	7,778,023원 이하	9,333,628원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02.02.)에 따라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해당주택에 신청불가																												
자산	부동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합산기준 3,496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p>
자동차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p> <p>•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p>-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p> <p>•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4. 입주자선정

■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태	일반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계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사목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 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 소 기 업 근 로 자	복 합 이 탈 주 민	지 원 대 상 한 부 모 가 족	비 정 규 칙 근 로 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해외거주재외동포 귀환국군포로 납북피해자 파독근로자 탄광근로자	다자녀 가구				
진건B1블록	72A	32	80	3	6	5	1	1	0	2	2	2	11	11	3	33	
	84A	87	233	10	15	13	2	4	1	6	6	7	32	32	9	96	
	84B	30	80	3	7	4	1	1	0	2	2	2	11	11	3	33	
	84C1	7	20	1	1	1	0	0	0	1	0	1	3	3	1	8	
	84C2	7	22	1	1	1	0	0	0	1	1	1	3	3	1	9	
84D	14	39	2	3	2	0	1	0	1	1	1	5	5	2	16		
지금A2블록	51A	51	91	4	7	6	0	2	0	3	3	3	14	3	4	42	
	51B	9	17	1	1	1	0	0	0	1	1	0	3	0	1	8	
	59A	154	339	16	26	21	1	5	0	10	10	10	49	29	14	148	
	59B	53	109	5	8	7	0	2	0	3	3	4	16	7	5	49	
59C	49	89	4	7	6	0	2	0	3	3	3	14	2	4	41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으로 기관에서 우리 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따라 해당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사목에 의한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자격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불필요합니다.
- 우선공급자의 일부 대상은 신청자가 없어 배정물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가. 전용면적 60㎡ 초과 [다산진건B1블록]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단, 2인 가구 경우 110%)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초과 120%이하인 세대(단, 2인 가구 경우 130%)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화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 100%이하가 공급신청서상 월평균소득 10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초과~120%이하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다산지금A2블록]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단, 2인 가구 경우 80%)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단, 2인 가구 경우 110%)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화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 70%이하가 공급신청서상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70%초과~100%이하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정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진건B1블록)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남양주시 거주자	→	배정합산	배정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입주자 선정순서(지금A2블록)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남양주시 거주자	→	배정합산	배정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 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여야 함)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p> <p>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p> <p>③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p> <p>④ 「한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사람</p> <p>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p> <p>*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p> <p>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p> <p>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p> <p>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p> <p>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1956.10.29 이전 출생자, 당일포함)</p> <p>⑩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p> <p>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p> <p>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p> <p>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p> <p>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p> <p>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2002.10.29.이후 출생)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 태아수 확인불가 시 1인으로 인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p>
<p>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p>	
<p>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p>	

<p>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리목)</p>	<p>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된 사람</p> <p>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p> <p>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p> <p>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p> <p>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p> <p>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p>
<p>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미목)</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로 판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p>

■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p>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p> <p>-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p> <p>-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제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임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임신 또는 임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입주 시 출산·유산, 임양 유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p> <p>-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 시 추가되는 신청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p>																															
<p>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p>	<p>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p> <p>- 배점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1332 1045 2139 1364"> <thead> <tr> <th>구 분</th> <th>3점</th> <th>2점</th> <th>1점</th> </tr> </thead> <tbody> <tr> <td>① 가구소득</td> <td>-</td> <td>-</td> <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명인 경우, 60%이하)</td> </tr> <tr> <td>②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td> <td>3명 이상</td> <td>2명</td> <td>1명</td> </tr> <tr> <td>③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이후)**</td> <td>3년 이상</td>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1년 미만</td> </tr> <tr> <td>④ 청약 납입 횟수</td> <td>24회 이상</td> <td>12회 이상 24회 미만</td> <td>6회 이상 12회 미만</td> </tr> <tr> <td>⑤ 혼인기간(신혼부부만 적용)</td> <td>3년 이하</td> <td>3년 초과 5년 이내</td> <td>5년 초과 7년 이내</td> </tr> <tr> <td>⑥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적용)</td> <td>만2세 이하</td> <td>만3세 또는 만4세</td> <td>만5세 또는 만6세</td> </tr> </tbody> </table> <p>*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인가구)2,737,521원 이하(60%)(3인가구)3,120,260 원 이하 (4인~5인가구)3,547,103 원 이하 (6인가구)3,696,824 원 이하 (7인가구)3,889,012원 이하</p> <p>*③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남양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p>				구 분	3점	2점	1점	① 가구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명인 경우, 60%이하)	②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③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이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④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⑤ 혼인기간(신혼부부만 적용)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⑥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적용)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구 분	3점	2점	1점																													
① 가구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명인 경우, 60%이하)																													
②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③ 남양주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이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④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⑤ 혼인기간(신혼부부만 적용)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⑥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적용)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유의사항	* 혼인가간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산·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진건B1블록)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및 사목 제외)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배정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정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순위 → 배정합산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홍보 명단에 따릅니다.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장애정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지급A2블록)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및 사목 제외)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배정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정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순위 → 배정합산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홍보 명단에 따릅니다.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장애정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 배점기준표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사목제외)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공고일 기준 만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남양주시 거주기간 (성년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중년 청약저축 포함)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2점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1.10.29)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1.10.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입니다.

** 남양주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합니다.

* ⑦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단 우선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에서의 배점기준이 되므로 위 배점기준표를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신청방법

■ 장기전세주택 신청안내

■ 청약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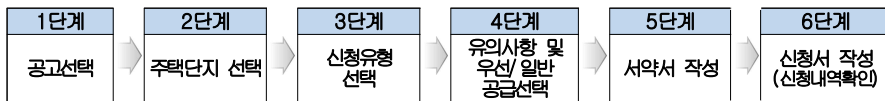
①공동인증서 준비 → ②임대주택 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 ③인터넷청약신청 → ④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임대주택 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③ 인터넷신청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달라 모집일정을 확인(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정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일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정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1.10.29) 기준 남양주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등본상 남양주시에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1.12.7.) 18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당첨결과 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 장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우리공사 요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터넷 홈페이지(www.gh.or.kr)→임대주택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신청마감일 오후 18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10.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을 불필요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기한 ['21. 12. 13(월)~' 21. 12. 20(월)]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 12. 2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주소

(12285)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12-14(메트로타워4층, 경기리츠1호 홍보관) 장기전세 담당자 앞
*봉투 겹면에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 서류제출(신청 주력명)”** 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청약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 모두 구입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입주자모집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인터넷 공공문 양식참고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남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가정) 또는 1년 이상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피부양자)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록되어 세대주와 배우자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요	

■ 기타 보완서류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 배우자 신분증 사본 • 만 30세 이상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공통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 복지 센터 / 공사 양식
(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자 우선공급 신청자)	• 노부모부양자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함	행정복 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정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40㎡초과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 시	행정 복지 센터

■ 추가서류

구비서류	비고
저층 신청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세대 ※신청 시,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 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 선 공 급 대 상 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단, 부동산 산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점 불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 제출기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서류 :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임주) 확인서	입소시설
	⑧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 확인서	입소시설
	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⑫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⑬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⑭ 「국군포로의 승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⑮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로서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 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 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센터
	⑯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⑱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임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임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임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2.3.14(월) 18: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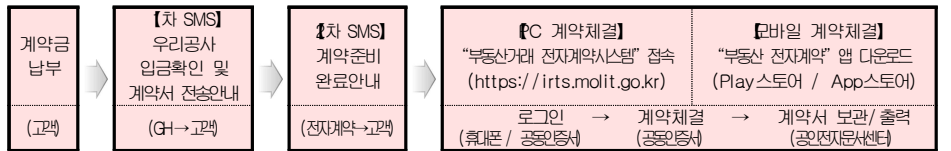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주택타입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자 계약 및 입주 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3.21.(월) 10:00 ~ 2022.3.31.(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상황에 따라 현장계약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당첨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중 각각 1회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업무 진행에 따라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3.21.(월) 10:00 ~ 2022.3.31.(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자는 아래 구비서류(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준비해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등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현장계약장소 및 방법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입주안내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 등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안내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래피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조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임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임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임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시</th> <th>2회차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05%</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05%</td> <td>11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시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시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임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임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임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주자 또는 임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임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임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기타사항	<p>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임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임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임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임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임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임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임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주택은 사업주체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준공후 취득하는 즉시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됩니다. 해당주택의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이 불일치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전세자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및 잔금 납부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및 GH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세대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임주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임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주개시일 이전에 임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p>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p>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p>■ 단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임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임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문주는 출입구 인근에 1개소(단지별 1개소만 설치)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보도, 조경, 주차장 등) 및 대지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 (소방차전용주차구획 등)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그 위치, 크기 및 모양 등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 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 유관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높이가 다소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각 세대와 근린생활시설(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D/A 등이 저층부 세대에 근접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실제 시공시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임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판매시설 임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변권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 /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주차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반향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의 위치, 모양,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에 따라 다릅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열교환을 통해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온수로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시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 PIT천정 및 벽체는 단열재설치 외 별도의 마감미 없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 등 다소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별 E/V사용은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방상 설치되는 에어매트 구간은 교육,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각 동별 지하 동 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임산부 주차, 경차 주차, 전기차 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동별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자립형, 이동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 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급속 1개소+완속 3개소(다산진건B1) , 급속 1개소+완속 4개소(다산지금A2)가 설치되며, 전기차충전시 대기시간이 장시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종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통행시 줄눈 설치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도장마감이 아닌 뿔칠로 시공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바닥은 면적이 넓어 바닥 물청소 시 구매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시 트랜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자동차 회전 이동시 마찰음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산책로포함)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단위세대 일부 공간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현황,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팬용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앞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자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대계약 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팜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 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외벽 저층부는 화강석 및 석재뿔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일부분에 한하여 외부 수성페인트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매립 설치(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되며, 침실2, 3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정경을 위하여 정경홀 설치 예정입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각 층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방가구, 화장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바닥마감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윤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비데는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공용욕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옥실에 설치되는 수전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해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며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환기용 유니트는 겨울철 결로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각종 인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건건B1 102동, 지금A2 106동)에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식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영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2층,최상층에만 설치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오델하우스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사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사품은 입주 시 미설치 품목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시설물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해당시설을 위한 관리는 용도 별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 84C2형은 3세대 동거형으로 3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세대이로서,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책임자가 불가합니다.
- 84C2형은 공간의 구분을 위해 중문 및 보조주방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급형에 당첨될 경우 중문 및 보조주방 등 구분 시설의 미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84C2형은 구분된 공간별로 난방, 수도량, 온수량 별도 확인은 가능하나, 원격검침 및 요금부과는 해당 공급형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며, 별도 검침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시행자 및 GH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 보성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 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인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 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시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의 노선 및 개통시기 등은 해당주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에 의한 공사 및 운행으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내 초,중,고등학교의 정확한 개교시기 및 배정은 해당 교육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장애인 편의증진시설) ②항 장애인편의증진시설은 별표8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되 후분양 등의 공급일정 또는 공사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단지명	구분	적용 여부
다산진건B1블록 다산지금A2블록	고기밀장호	적용
	고효율 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단지명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급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욕실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동통로 유도시설	복합형유도등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화재시 작동)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공사 진행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항목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 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
- 신청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체결 내

11. 저층배정 안내

신청 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 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에서 저층배정 되므로 당첨여부관계없음)

12.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다산진건 B1블록 (다산진건 데시앙)	(주)경기리츠공공임대 제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851-88-01138)	(주)태영건설 (105-81-74543)	-	건축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금호건설(주) (104-81-31309)		전기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502-81-29273)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소방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디엘건설(주) (102-81-34561)		통신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다산지금 A2블록 (다산지금 데시앙)	(주)경기리츠공공임대 제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851-88-01138)	(주)태영건설 (105-81-74543)	-	건축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408-81-42391)
		금호건설(주) (104-81-31309)		전기 (주)삼진탐테크엔지니어링 (215-81-88868)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소방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디엘건설(주) (102-81-34561)		통신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0-81-05762)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및 위 대리인(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총전의 「건축법」(법을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또는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p>1. 지체장애인</p> <p>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p> <p>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p> <p>라. 신체에 병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p> <p>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p> <p>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p>	<p>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p> <p>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p> <p>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p> <p>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p> <p>2. 뇌병변장애인</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p> <p>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p> <p>3. 시각장애인</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p> <p>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p> <p>4. 청각장애인</p> <p>가. 청력을 잃은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p> <p>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p> <p>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p> <p>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p> <p>5. 언어장애인</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p> <p>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p> <p>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p> <p>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p> <p>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p> <p>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p>
---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혹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노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부동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지방세청 자료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랑기준가액 -지방세청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13. 현장접수 장소 및 문의처

구분	위치
<p>다산진건 B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6번길 12-14, (메트로 타워 406호) 운영시간 : [10:00~17:00]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문의전화 : 031-554-1633 찾아오시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철 :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서 약 3km(자연앤롯데캐슬 정문 정류장 or 힐스테이트 후문 하차) ② 버스1 : 자연앤롯데캐슬 정문 정류장 일반버스 : 34, 95번 간선버스 : 1003번 ② 버스2 : 힐스테이트 후문 정류장 일반버스 : 팽큐 10번 간선버스 : 1006번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주택의 경우, 별도 실물건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 견본주택 대체) ※ 사이버견본주택(PC, 모바일) - 주소 : http://다산신도시세시앙.com/ 	<p>※ 지도출처 : 카카오맵</p>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1.10.29.

사업주체 :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임대관리수탁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점서명, 만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본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서명)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입차권 불법 양도 및 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입일, 주소 포함)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자격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 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연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입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위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위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결정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자격조사, 심사, 계약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자격정보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위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위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보증금 결제(카드), 임대보증금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자격 가입내역 확인 임대보증금 결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약번호, 지번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분번호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입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연구]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 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연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장기전세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_____
- 주민등록상주소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_____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_____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_____ (인)

(2) 예비배우자 : _____ (인)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대리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